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학생 행동 수칙

정책 및 절차

I. 목적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ISD" 또는 "대학")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학습, 연구, 교수, 창작 활동, 업무 수행, 방문 또는 자원봉사를 위해 이곳에 머물고 활동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RISD는 이러한 개별적 선택이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신중하고 숙고된 결정이라고 전제합니다. RISD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은 학문적·예술적 우수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학습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수칙")의 목적은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정책, 절차 및 조치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선택과 행동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수칙은 형법이 아니며 형사법 체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RISD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 또는 주 법령상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RISD 공동체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에 규정된 기준, 정책, 절차 및 조치는 학생들이 RISD를 비롯한 더 넓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RISD의 교육적 사명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II. 권리 선언

RISD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학습에 적합하고 고등 교육의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학습하거나 창작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합리적인 수준의 사생활 보호권, 불만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이용할 권리, 그리고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위반 혐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생 교육 기록의 프라이버시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미국 연방법 「가족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FERPA)」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의 전체 내용은 연간 FERPA 공지(<https://risd.coursedog.com/academic-policies/student-records/ferp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적용 범위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RISD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한 학생은 아래에 정의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전체 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학사 연도, 방학 기간, 그리고 각 등록 기간 사이의 모든 시기에 본 학생 행동 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은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이에는 RISD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학술, 사회, 교육, 문화, 또는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온라인상의 학생 행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섹션 V.C.2를 참조하십시오. 교내 또는 교외에서 발생한 학생의 행동이 본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하거나, 대학 및/또는 대학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행동은 학생 행동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ISD는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공동체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온라인 콘텐츠를 인지하게 된 경우, 학생은 대학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학생 행동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RISD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는 동안 학생들은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국제법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은 본 학생 행동 수칙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 수칙의 위반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ISD는 동일한 행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기타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법적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거나 학생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경우에도 본 학생 행동 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동이 형법, 본 학생 행동 수칙 및/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RISD 정책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학생 행동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절차는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기준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 절차 이전,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 절차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리고 학생 행동 심의 절차를 축발한 동일한 행위와 관련된 형사 혐의가 기각되거나 감경되거나, 형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종결되는 경우에도,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합의 사항 또는 판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은, 본 수칙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개인이 RISD의 “학생”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졸업식 당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ISD 학생이 본 학생 행동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진행되는 동안 퇴학하거나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졸업, 퇴학, 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RISD에 소속되지 않은 후에야 RISD가 해당 학생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도, 본 학생 행동 수칙 심의 절차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본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이민 신분과 선택적 실습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F-1 신분과 관련한 문의는 국제 학생 및 학자 사무국(ISSA)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IV. 정의

- A. “학생”이란, 학점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교육 제공을 위해 RISD로부터 입학을 허가받았거나, 입학금을 납부하였거나, 학적·수강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그 밖의 교육 관련 계약 관계를 RISD와 체결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적용을 위한 “학생” 신분은, 개인이 입학 허가를 받거나, 납부를 완료하거나, 등록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비록 아직 교내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작되며, 학생이 졸업식 당일 해당 프로그램을 완료하거나,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RISD에서 퇴학하거나 제적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휴학 중이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의료 휴학 중이거나, 학업 또는 학생 행동상의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개인은 본 학생 행동 수칙과 관련해 계속하여 “학생”으로 간주됩니다.
- B. “캠퍼스”란 RISD가 소유, 임대,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모든 토지, 건물, 시설을 의미합니다.
- C. “RISD 공동체 구성원”이란 RISD의 학생, 교수진, 직원, 자원봉사자, RISD 캠퍼스를 방문하는 자, 그리고 RISD 캠퍼스 경계 내에 위치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 D. “학생 단체”란 공통의 관심사, 목표 또는 사명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된 그룹으로서, 학생 참여 센터 또는 기타 RISD 담당 부서의 지침과 감독 아래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학생 단체 또는 운동팀을 말합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E. “신고인”이란 본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 주장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F. “피신고인”은 본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로 주장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G. “자문인” 자문인의 역할은 학생 행동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문인은 해당 학생에게만 지원, 안내 및/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으로서 또는 관계된 학생을 대리하여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문인은 학생, 교수진 또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대학의 직원라 하더라도 학생 행동 자문인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학생 행동 자문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은 학생 안내서(Student Handbook) 및 학생 행동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법률 학위를 보유한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학생 행동 회의 또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행동 자문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다음과 같은 사건에 관여한 경우(이에 한정되지 않음): 성폭행, 성희롱,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구체적인 자문인 지침은 형평 및 준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2.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평 및 준수(Equity and Compliance) 절차를 제외하고, 법률 학위를 가진 자 또는 변호사의 참여가 요청되는 모든 경우에는 학생처 부처장(Associate Dean of Students)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H. “보복”이란 정책 위반을 신고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절차에 참여한 개인에게, 제3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이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선의로 제출된 신고 또는 정보에 적용됩니다. 보복 행위의 예에는 합리적인 개인의 지원 서비스 이용, 보호 조치 및/또는 편의 제공 및/또는 정책 위반 신고를 방해하는 위협, 협박, 괴롭힘 또는 그 밖의 모든 방해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복에는 정책 위반 신고에 대응하거나 그 신고를 이유로, 정책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및 해결의 전·중·후 단계에서 다른 개인의 학업, 직업, 거주 환경을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협 또는 손상시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 I. “우세한 증거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은 모든 학생 행동 사안의 판단에 적용되는 입증 기준입니다. 우세한 증거의 원칙은 미국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 기준이나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으로, 피신고인 해당 위법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V.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기준

RISD는 학생과 학생 단체가 학문적·예술적 우수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학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학생은 법적 요건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명시된 추가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 또한 준수할 것이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RISD는 모든 학생이 상호 간은 물론 직원 및 교수진을 항상 공감과 배려의 태도로 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RISD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특권이며, 학생 행동 절차는 학생의 행위가 그 특권의 박탈 또는 제한(변경)을 정당화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형평성과 포용은 본 공동체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은 포용을 증진하고, 차별과 편견(인종주의, 성차별, 이성애주의, 계급 차별, 장애 차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영향과 결과에 반대합니다. RISD의 이러한 목표와 지향을 공동의 혁신과 책무가 수반되는 전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행위는 대학 공동체의 건전성과 기능적 효과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금지됩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금지 행위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규범적 지침의 역할을 할 뿐, 이를 모든 금지 행위를 빠짐없이 담은 목록 또는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목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 및 학생 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연방, 주 및 지방의 모든 법률을 준수할 것

B. RISD 웹사이트 및 문서(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에 게시된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한 <http://policies.risd.edu>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모든 일반 RISD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할 것

- [학업 부정행위](#)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 [신고식 가혹행위 금지 정책](#)
- 컴퓨터 사용
- 동의에 기반한 관계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식당 이용 규정
- 드론 운영 정책
- 환경보건 및 스튜디오 안전 정책(["http://info.risd.edu/EHS/"](http://info.risd.edu/EHS/))
- 지역사회 배려 정책
- 설치 장소 정책
- 의료용 대마 정책
- 게시물 부착 정책
- 집회 및 시위 정책
- 차별금지 정책 및 절차
- 기숙사 생활 정책
- 서비스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 정책
- 재료 분사(접착제, 페인트, 도료, 고정제) 사용 정책

C. 학생 및 학생 단체는 RISD 공동체 내에서 합리적으로 보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어야 했을 기타 모든 형태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한 방식으로 표현된 정당한 비평이나 그 밖의 의견 표명 또는 교실 안팎을 불문하고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행위가 본 정책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알려진 모든 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대학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의 예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수업, 학습 및 기타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되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수업, 학습 또는 기타 RISD 관련 활동, 그리고 RISD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 수행하는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또는 이에 간섭하는 행위

(b) RISD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

2. 타인에 대한 위해: 금지되는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타인을 대상으로 괴롭힘, 학대, 위협, 협박,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불성실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강요적인 행위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경우(구두, 서면, 시각적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 게시물, 인공지능(AI) 사용, 가혹행위, 보호 대상 계층·지위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기반한 발언이나 행위를 포함함)

(b) 교내 또는 교외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대학이 주관·후원하는 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

본 정책의 적용에 있어 '타인에 대한 위해'란, 합리적 사람이 보기기에 그 정도가 중대하거나 지속적이거나, 또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서면적, 온라인 및/또는 신체적 행위로서, 교육적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생 행동 수칙 본 조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합리적인 시간·장소·방식에 관한 제한을 준수하는 한, 의견 표명, 비평, 풍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포함한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 행위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히 허위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항상 대학의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개인이 민사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3.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성적 비위 포함)

RISD는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 장애, 국적, 재향 군인 신분, 유전 정보 및/또는 그 밖의 모든 보호 범주를 근거로 한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본 대학은 성적 비위가 캠퍼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위법행위를 포함한 차별 및 차별적 괴롭힘 문제는 RISD의 [차별금지 정책](#)에서 처리됩니다. 본 정책과 그에 따른 절차는 형평 및 준수(Equity & Compliance) 부서가 관할하며,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라 집행됩니다.

성적 비위의 유형에는 성희롱,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성추행·성폭행), 성적 착취, 스토킹/사이버스토킹 및 RISD의 차별금지 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에 정의된 그 밖의 모든 성적 비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 정책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학생에 대한 제재 범위와 집행은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기준 사무국(Office of Student Conduct + Community Standards)의 관할에 속합니다. 절차와 정책(정책 용어 정의 포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형평 및 준수 부서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4. 무기

(a) 사용, (b) 전시 또는 (c) 소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주된 목적이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 상처를 입히는 것,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것, 또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는 물건이나 물질, 그리고/또는 정당한 교육 목적(즉, 예술 제작을 위한 도구)이 없는 물건이나 물질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총기류, 작동 여부를 불문한 3D 프린팅 무기, 공기총, 탄약, 새총, 곤봉, 금속 너클, 둔기, 스위치블레이드(자동 개폐식 칼), 보이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종단할 의사가 없거나 종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프, 사냥/낚시용 칼 또는 로드아일랜드 주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칼날 길이가 3인치를 초과하는 모든 칼을 은닉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폭발물(불꽃놀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최루가스, 메이스(mace)와 같은 위험 화학물질, 발사체를 발사하는 장치,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장난감이나 무기나 무기 모형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기타 어떠한 물건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는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화학 스프레이형 방어 물질은 기숙사 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캠퍼스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로젝트 또는 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담당 교수의 인지 여부 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을 캠퍼스로 반입하거나 사용하기에 앞서 반드시 **설치 허가서(installation permit)**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약물, 알코올 및 기타 유해 물질

(a) 법률 또는 RISD 정책에 따라 금지된 방식으로 **약물 또는 약물 관련 기구** 또는 기타 물질을 사용·소지 및/또는 유통하는 행위, 해당 물질이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본래 의도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행위, 또는 그밖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처방약의 오용 및 유통 역시 캠퍼스 정책 위반에 해당합니다. 로드아일랜드 주법에 따라 만 21세 이상에게는 합법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마 및 처방된 의료용 대마는 미국 연방법인 「약물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법(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을 준수하여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RISD의 의무에 따라 캠퍼스 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적용에 있어 약물이란, 대마(식용 포함), 몰리(MDMA), 코카인, 합성 약물, 살비아(salvia)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물에는 개인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되지 않은 처방약, 그리고 해당 개인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오남용하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약물 관련 기구에는 봉(bong), 워터 파이프, 유리 파이프 또는 기타 모든 흡연용 파이프, 기구, 그라인더, 약물 흡입에 사용되는 베이퍼라이저(vaporizer)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법률 또는 RISD 정책에 따라 금지된 방식으로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을 사용·소지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RISD의 “의료적 선처(Medical Amnesty)” 정책(<https://policies.risd.edu/student-life/medical-amnesty-policy/>)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의 이러한 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학생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해당 사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6. 재산 침해 및 절도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a) 절도 (b) 파괴 (c) 손상 (d) 훼손 (e) 오남용하는 행위로서, RISD의 재산 또는 서비스 및/또는 타인의 재산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또는 (f) 타인의 승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서비스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g) 다음의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RISD 공동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자동심장충격기(AED), 화재 경보 장치, 화재 방호 시스템, 휴대용 소화기 및 기타 화재 안전 장비를 훼손·조작하는 행위, 대학 소유 재산 내에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 기숙사 내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취사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물품을 발견한 학생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물품을 RISD 공공안전부(RISD Public Safety)에 신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무단출입

(a) RISD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RISD 건물, 강의실, 실험실, 사무실, 시설 또는 기타 모든 구역에 출입하거나 해당 장소에 체류하는 행위

(b) RISD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발급되지 아니한 RISD 건물, 시설 또는 기타 구역의 열쇠 또는 출입 카드를 소지·복제 또는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RISD 소유의 식당 시설, 강의실, 행정 사무실, 행정 건물, 밸코니, 비상 탈출로, 옥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 RISD가 소유하지 않은 사유 자산에 무단 침입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8. 준수 불이행/비준수

(a) 직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RISD 관계자의 합리적인 지시 또는 경고에 따르지 않는 행위

(b) RISD 관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

(c) 경보음이 울릴 때 또는 퇴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건물을 떠나지 않는 행위

(d) 캠퍼스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행위

(e)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라 부과된 모든 조치, 형평 및 준수(Equity & Compliance) 절차의 결과로 부과된 조치, 본 수칙에 따라 또는 별도로 체결된 모든 행동 계약(behavioral contract) 및/또는 임시 접촉 제한 지시(Temporary Directive) 또는 접촉 금지 지시(No Contact Directive)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RISD 직원 및 교수진, RISD 공공안전부(RISD Public Safety), 기숙사 생활 직원(레지던트 어드바이저[Resident Advisor]를 포함) 및/또는 대학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부정직한 행위

- (a)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b) RISD 관계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 (c) RISD 기록의 위치, 변경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 (d) [학업 관련 학생 행동 수칙](#)의 모든 위반 행위
- (e) 본인 외의 타인의 RISD 신분증(ID)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f)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리적으로 사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는 환경(강의실, 사무실, 업무 환경, 기숙사, 화장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타인을 영상 또는 음성(시청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g) 회의, 수업 강의 또는 비평에 대하여, 해당 회의 주관자와 참가자, 담당 교원, 강연자, 초청 비평가 또는 그밖에 녹음·녹화 대상이 되는 자의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녹음·녹화하는 행위는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0. 학생 행동 수칙 운영 방해(보복)

(a) 본 수칙의 절차에 대한 참여를 방해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b) 본 수칙의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든지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학생 행동 절차의 어떠한 부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만으로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위반 혐의의 처리 및 최종 결정이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11. 무단 동물 – RISD가 소유, 임차, 관리 또는 운영하는 모든 건물에 허가되지 않은 동물을 출입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동물 관련 지침은 [캠퍼스의 동물\(Animals on Campus\) 정책](#), [서비스 동물](#) 및 [정서적 지원](#) 동물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숙사 내 동물 관련 지침은 [기숙사 생활 정책\(Residence Life Policies\)](#)을 따릅니다.

VI. 절차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종단할 의사가 없거나 종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은 교육 공동체라는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방침과 절차는 연방, 주 및 지방 법률과 그에 따른 절차와는 상이합니다. 다음에 정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적용됩니다. 차별금지 위반과 관련된 사안 및 학업 부정행위(Academic Misconduct)가 포함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건은, 각각 RISD의 별도 절차에 따라 심의·판단되며, 해당 절차는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 및 형평·준수 절차: <https://students.risd.edu/living-risd/equity-compliance> 및 학업 부정행위 절차: <https://risd.coursedog.com/academic-policies/academic-misconduct>)

또한, 학업 부정행위 위반 혐의로 인해 학업 관련 행동 수칙(Academic Code of Student Conduct)에 따라 공식적인 행동 수칙 절차로 회부된 학생에게는 조치 선택(Choice of Action) 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업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학업 관련 행동 수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risd.coursedog.com/academic-policies/academic-misconduct>.

RISD는 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신고인에게는 다음 사항(제기된 위반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 통지, 해당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A. 신고 접수 및 절차 개시

RISD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든지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Student Conduct + Community Standards)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온라인 신고 양식(<http://incidentreport.risd.edu>)을 통해 신고하거나, 3rd floor of Carr House, the Public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종단할 의사가 없거나 종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Safety Office at 30 Waterman Street에 위치한 학생 행동 사무국(Office of Residence Life) 또는 First Year Quad에 위치한 기숙사 생활 사무국(Office of Residence Life)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401) 454-6666번으로 전화하거나 “RAVE App”을 이용하여 즉시 공공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심되는 위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ISD 차별금지 정책(Nondiscrimination Policy)이 적용되는 신고를 제외한 기타 모든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는 공동체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고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RISD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

B. 학생 행동 담당자 지정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는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에게 전달됩니다. 학생 행동 책임자가 해당 신고에 대하여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절차로 회부할 필요가 있는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책임자는 본 수칙에 따른 어느 해결 경로가 해당 신고에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VII 절차의 정의 참조). 해결 경로가 결정되면 해당 신고는 검토, 조사 및 최종 판단을 위하여 학생 행동 담당자(Conduct Administrator, “CA”)에게 배정됩니다. 학생생활처(Division of Student Life) 소속의 모든 전일제 직원은 학생 행동 담당자로 지정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검토 및 조사

- 학생 행동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신고가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위반 또는 기타 RISD 정책 위반을 명확히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위반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학생 행동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절차에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의 면담, 관련자의 서면 진술서 확보 및/또는 그 밖의 관련 가능성 있는 기록이나 정보의 수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 종인 및 그 밖의 관련자는 지정된 학생 행동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을 위하여 연락을 받게 되며, 학생 행동 절차 및 면담과 관련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의 RISD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학생이 이미 졸업한 경우에는 등록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RISD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학생 행동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RISD 공동체 구성원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그러한 선택만으로 해당 절차의 진행이 반드시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담 과정에서 학생은 제시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가집니다.
- 모든 신고가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책임 인정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RISD와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담당 부서는 본 수칙과 RISD 공동체 규범에서 정한 행동 규범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 재량에 따라 면담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E. 절차에 대한 미응답 및 미참여

예비 면담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학생 행동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 행동 담당자는 피신고인이 해당 위반 혐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VI장 “조치”에 따라 결과를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행동 담당자는 행정 회의가 개시되기 전 언제든지, 해당 사안을 행정 회의(아래 정의 참조) 대신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F. 법적(민형사) 절차 진행에 따른 학생 행동 절차의 연기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이 형사 또는 민사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신고인은 학생 행동 절차의 진행을 최대 30일 동안 달력일 기준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정보 제공 면담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학생처 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연기 요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연기 요청이 승인되는 경우, 학생처 부학장 또는 그 지정자는 사건별로 판단하여 연기 기간 동안 임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는 항소 요청을 포함하여 학생 행동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30일의 연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학생 행동 절차를 재개하는 책임은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에게 있습니다.

VII. 절차의 정의: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라 회부된 위반 혐의는 아래에 규정된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심의·판단 됩니다.

학생은 심의 절차와 관련된 모든 안내 및 통지를 RISD 캠퍼스 메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학생은 자신의 RISD 이메일 계정을 매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RISD 관계자가 발송한 어떠한 형태의 통지나 요청에 응답하지 않더라도(제 VI장 절차 E항 참조), 학생 행동 절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 A. 조정 - 대인 간 갈등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는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하는 비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가 협력적인 태도로 조정에 임할 의사가 있고, 해당 당사자들과 학생 행동 담당자 전원이 조정이 적절한 해결 방식이라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선택되는 경우,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는 조정자를 지정합니다. 조정은 대인 간 문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RISD의 차별금지 정책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정책 위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도출된 해결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합의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자가 어느 시점에서든 추가적인 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 합의가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학생 행동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B. 공동체 회의: 절도, 재산 손괴, 공동체 질서 교란 등과 같이 금지된 행위를 하여 타인 또는 공동체에 피해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학생은, 공동체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피해를 발생시킨 학생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공동 진행자가 함께 모여,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고 완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됩니다. 공동체 회의는 모든 당사자에게 자발적인 절차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행정 회의 또는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안은 행정 회의로 회부됩니다.

C. 행정 회의

- 행정 회의에서는 1인 이상의 학생 행동 담당자가 신고된 사안을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회의와 유사하게, 피신고인과 학생 행동 담당자는 증인을 제시하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자에 한하며, 심리일 이전 48시간까지 해당 심리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격 증인”(다른 사람의 도덕적 행동 및 훌륭한 평판을 증언하는 사람)은 심리 절차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행동 및 공동체 규범 담당 부서 또는 지정된 학생 행동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이메일 또는 지지문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행동 담당자는 우세한 증거의 원칙에 따른 입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조치 선택(Choice of Action)” 절에 이미 명시된 바와 같이, 피신고인이 행정 회의 이전 또는 당일에 그 전에 출석하지 않거나, 참여 또는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학생 행동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심의·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통지를 무시하거나, 이를 열어보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행위는 출석·참여·협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생 행동 담당자는 행정 회의가 개시되기 전 언제든지, 해당 사안을 행정 회의 대신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행정 회의에 참석할 때 자문인 또는 지원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RISD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자문인 1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사무국은 RISD 공동체 소속의 자문인 1인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문인에 관한 정보는 심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상 기소된 경우 또는 형평 및 준수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자문인으로 동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문인 및 지원자는 제C.3항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회의 > 자문인에 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학생 행동 담당자는 해당 증인의 예정된 증언이 위반 혐의와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진술과 충복되거나, 또는 위반 혐의의 심의 및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심리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학생이 요청한 증인의 출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담당자는 추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D.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회의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회의에서는 최소 4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교수 1인, 직원 1인, 학생 2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 1인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장은 평의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적 1표를 행사합니다.
-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는 교수진이 선정한 교수 후보군, 학생처 부학장이 선택한 직원 후보군,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사무국이 학생생활처와 협의하여 선정한 학생 후보군 중에서 교수, 직원, 학생 위원을 선발합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거나 위원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는 학생처 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수, 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반드시 교수·직원·학생의 세 집단 모두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해 충돌이나 편견이 있는 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또는 편견이 존재하는 경우,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충돌이나 편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RISD의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회의는 조사 중심 모델에 따르며, 당사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심리를 주도합니다.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심리는 아래에 제시되는 절차 개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행정 회의의 절차와는 상이합니다.

1. 통지

- 피신고인에게는 예비 면담에서 논의되고 이후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 심리에서 심의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제공됩니다. 심리 일시 및 장소는 통상적으로 추후 학생의 RISD 이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제VI장 D항 조치 선택 참조).
- 학생이 예비 면담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위반 혐의의 내용, 심리 일자, 심리 장소 및 시간 포함)는 피신고인의 RISD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 통지를 무시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읽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공식적인 행동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2.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의 일반 운영 및 참여

-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은 절차의 진행 순서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위원장은 회의가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및 판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전체 진행을 조율합니다. 위원장은 회의 중 방해, 괴롭힘, 위협 또는 그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심리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종단할 의사가 없거나 종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심리는 일반적으로 피신고인, 신고인 및 각자의 자문인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위원장이 해당 인원의 참석이 위반 혐의의 심의 및 판단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문인

-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는 본 절차 전반에 걸쳐 안내를 받고 동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선택한 자문인 1인을 심리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RISD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선택한 자문인 1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사무국은 RISD 공동체 소속 자문인 1인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본 학생 행동 수칙의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상 기소된 경우 또는 형평 및 준수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를 자문인으로 동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문인을 요청한 학생은 해당 자문인의 성명, 학생과의 관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법학 학위 보유 여부 또는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며(법률 대리인은 형사 기소가 병행된 사건 또는 형평 및 준수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하여 자문인으로 활동할 수 있음), 자문에 관한 정보는 심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정의 중 자문인 조항 참조).
- 자문인은 심리에 참석하는 동안 수동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문인은 신고인, 피신고인, 증인을 대신해 발언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직접 발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자문인의 역할은 조사, 심의 및 항소 절차 전반에 걸쳐 학생을 지원하고 동행하는 데에 한정됩니다. 연루된 학생은 행동 절차 전반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진술하여야 하며, 절차상의 참여는 관련된 해당 학생과 증인으로만 제한됩니다. 위원장은 자문인의 행동이 본 수칙에 규정된 지침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자문인을 절차에서 퇴장 시킬 권리를 보유합니다.
- 사건에 관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의 risd.edu 이메일을 통해 학생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d. 증인

-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는 심리에 증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요청은 심리일로부터 최소 48시간 이전까지, 학생의 RISD 이메일 계정에서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의 RISD 이메일 주소로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청서에는 요청된 증인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는 해당 증인의 예정된 증언이 위반 혐의와 충분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증언과 증복되거나, 또는 위반 혐의의 심의 및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이 요청한 증인의 출석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자는 추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RISD의 교수, 직원 및 학생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다만,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가 증인의 불참으로 인하여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가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및 판단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심리 절차의 진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e. 정보 제시

- 민사 또는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 규칙은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심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은 조사 요약, 관련 사건 보고서, 증인 진술서 및 기타 관련 문서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도록 학생 행동 담당자(일반적으로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책임자가 관련성과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추가 정보의 제시를 허용하고, 기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방식, 성격 및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조율합니다. 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해결과 무관하거나 중복되거나, 또는 그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와 증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심리는 항소를 대비한 목적을 위하여 녹음되며, RISD의 [기록 보존 정책\(records retention policy\)](#)에 따라 보관됩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위원장뿐 아니라 학생 행동 심의 위원은 증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담당자는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은 위원장에게 질문의 방향 또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해당 방식이 위반 혐의의 심의 및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재량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이 안전상의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발인의 물리적 출석 없이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신고인은 증인의 진술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진술과 답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 피신고인의 과거 학생 행동 수칙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가 해당 피신고인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또는 정책 위반이 성립된다고 권고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기록은 위원회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 정보 및 증인의 제시가 모두 종료된 후, 피신고인과 신고인(해당되는 경우 및 출석한 경우)은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f. 평의 및 권고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정보 및 증인의 제시가 종료된 후,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는 우세한 증거의 원칙(“개연성”)의 입증 기준에 따라, 제기된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 피신고인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위반이 성립된다고 권고하는 경우,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는 부과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권고하며, 해당 조치의 결정을 앞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인의 과거 학생 행동 기록(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한 추가 정보 및 피신고인의 추가적인 진술을 요청하고 청취할 수 있습니다.
-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는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와 함께 비공개 회의에서 평의를 진행하며, 이 평의에는 피신고인, 신고인, 이들의 자문인, 증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은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권고 사항을 제출합니다.
-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가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하는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권고는 학생처 부학장 또는 그 지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 최종 결정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는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피신고인의 RISD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합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후속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면담 일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도 최종 결정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h. 항소

1. 항소권 및 사유

학생 행동 절차에 참여한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모두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최종 결정에 대한 단순한 의견 또는 불만은 항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한하여만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는 학생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a. 최종 조치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b. 피신고인이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합리적인 노력으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신규 증거가 존재하며, 해당 증거의 부재가 최종 조치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c. 부과된 최종 조치가 인정된 위반 행위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경우

2. 항소 절차

모든 항소는 결과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항소 양식(Appeals form)을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최초의 조치 또는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 진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소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모든 관련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 변호사, 자문인, 친구, 교원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발송하는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항소 요건을 충족하는 항소가 접수된 경우, 항소 담당자(Appeals Administrator)는 재량에 따라 항소 진술 및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학생 행동 담당자 또는 그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협의하거나, 및/또는 피신고인에게 항소 사유를 대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면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항소 담당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항소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또는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사안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로 환송하여 추가 심리 또는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 행동 절차는 절차의 정의(Definitions of Process)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개시됩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항소 담당자는 항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항소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한 학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항소 담당자의 결정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항소를 제기한 학생의 RISD 이메일 계정으로 통지됩니다. 항소 담당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소 결과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3. 항소 진행 중 조치의 집행 유예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학생은 조치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에는 조치가 집행되지 않으며, 학생은 계속하여 수업에 출석하고 교과 과정에 따른 학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 행동 절차의 결과로 학생이 대학에서 격리된 때에는(정학 또는 퇴학), 학생생활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피신고인이 대학 공동체 내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특정 개인의 안전 또는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및 기능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생은 조치와 동시에 즉시 캠퍼스에서 퇴거되어, 항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교외에서 그 결정을 대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VIII. 결과 및 조치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 또는 최종 조치는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성격을 띠며, 인정된 위반 행위에 상응해야 합니다.

학생 행동 담당자 또는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는 최종 조치를 결정할 때, 학생의 과거 위반 행위(현재 사안에 대한 학생 행동 절차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한함), 이전에 부과된 최종 조치 준수 실패, 해당 위반으로 인한 실제적·잠재적 피해, 위반을 저지른 학생의 의도와 동기의 정도, 위반 행위의 심각성, 광범위성 및 영향과 같은 요인들(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위법 행위 책임 인정, 해당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 그리고 해당 위법 행위를 성찰한 이후 학생에게서 확인되는 긍정적인 성장과 학습의 증거 역시 조치 결정 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또는 기타 불법 약물(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처방하지 않는 약물)을 자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판단력 저하 상태는 감경 사유가 아니라加重 사유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는 조치 판단 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 또는 제기된 위반 사건에 대한 면책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ISD 학생들은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동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학생 행동 담당자 또는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가 정한 모든 기한, 일정 및 이행 사항을 속지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행동 담당자 또는 학생 행동 심의 위원회는 학생에게 부과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별도로 통지하거나, 이를 추적하거나,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종단할 의사가 없거나 종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다시 상기시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과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된 조치들은 부과될 수 있는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배열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의 이전 행동 기록과 무관하게, 결정권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책임 인정 결정 이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조치 유형

1. 공식 경고 – 추가적, 반복적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더 중대한 최종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치입니다. 공식 경고는 단독으로 부과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제VIII.B3항에 규정된 “교육적 조치”와 함께 병과됩니다.
2. 행동 보호관찰 1단계(Behavioral Probation Level 1, “BP1”) – 학생이 RISD 정책 및/또는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위반의 횟수 또는 성질이 추가적인 정책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재학 신분에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중 학생이 다시 RISD 정책 및/또는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 보호관찰 2단계(Disciplinary Probation Level 2) 이상의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떠한 단계의 행동 보호관찰(Behavioral Probation) 상태에 있는 학생이라도 리더십 직책(예: 오리엔테이션 리더, 기숙사 자문인, 학생 자치기구 구성원, 학생 동아리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임원 또는 스포츠팀 주장)을 맡거나 RISD가 주관하는 사교적 또는 레크리에이션 행사 및 활동, 및/또는 RISD를 대표하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3. 행동 보호관찰 2단계(Behavioral Probation Level 2, "BP2") – 학생이 하나 이상의 학생 행동 수칙 위반으로 인해 대학에서의 재학 신분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중 학생이 다시 RISD 정책 및/또는 학생 행동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제재에는 기숙사 거주 자격 상실, 정학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정학 – 지정된 기간 동안 RISD의 학생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학생은 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정학 기간 동안 학생은 RISD 수업에 등록할 수 없으며, 모든 RISD 주관 행사 및 활동(학업 또는 공동 교과 과정 활동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타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캠퍼스 이용이 가능하며, 학생처 부학장 또는 그 지정자의 서면 허가 없이 캠퍼스에 재입장하거나 캠퍼스 내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Brown University에 교차 등록된 RISD 학생은 Brown 대학과 협의 후 해당 수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및/또한 RISD는 정학 기간 중 교차 등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은 복학이 허가되기 전에 대학이 지정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행동 절차의 결과로 RISD에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등록금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근로 학생 또는 캠퍼스 내 고용 포함)의 수혜 여부는 학생 행동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생 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재정 서비스(Student Financial Services) 부서에 문의할 것이 권장됩니다.

5. 퇴학 – 재입학 가능성 없이 RISD의 학생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RISD 강의에 등록할 수 없으며, 모든 RISD 주관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제공되는 기타 모든 특권이 박탈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캠퍼스 이용이 가능하며, 학생처 부학장 또는 그 지정자의 서면 허가 없이 캠퍼스에 재입장하거나 캠퍼스 내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학생 행동 절차의 결과로 RISD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등록금 환불, 추후 재입학, 대학 일자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재정 지원(근로 학생 또는 캠퍼스 내 고용 포함)의 수혜 여부는 학생 행동 절차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생 계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재정 서비스(Student Financial Services) 부서에 문의할 것이 권장됩니다.

B. 추가적 조치

1. 배상 – 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파손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금전적 비용을 배상하도록 학생에게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RISD 학생 행동 수칙 및 공동체 규범에서 벌금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2. 기숙사 거주·출입 권한의 변경 또는 상실 -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RISD 기숙사 시설에 거주 및/또는 방문할 수 있는 학생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박탈하는 조치 및/또는 학생의 캠퍼스 내 기숙사 배정을 이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 박탈 또는 이전 조치의 대상이 된 학생은 기숙사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기숙사 거주가 의무로 규정된 학생(예: 1학년 및 2학년)의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기숙사에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RISD 입학 요건이므로 정학 처분됩니다.

3. 교육적 조치 – 교육적 조치는 과제 수행, 대학 봉사 활동 또는 그 밖의 관련된 과제 부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육적 조치는 학생 행동 및 공동체 규범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학생이 책임이 인정된 위반 행위와 관련성을 갖도록 부과되어야 합니다.
4. 기타 최종 조치 또는 제한 – 학생의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조치, 제한 또는 조건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과문 제출 의무(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반성문, 관련 프로그램 또는 평가에 대한 필수 참여, 접촉 금지 또는 출입 금지 조치, 특정 권한 박탈, 등록 보류 또는 제한, 학위 취소,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IX. 추가 기준, 절차 및 최종 조치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전 장에 열거된 제재나 최종 조치 외에도, 위원회 또는 심리 담당자는 다음의 최종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A. 비공식 경고 – 학생의 위반 행위로 인해 기숙사 또는 기타 학생생활 직원, 공공 안전 책임자 또는 기타 RISD 관계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부하는 경고 조치를 말합니다. 비공식 경고는 공식적인 징계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후 이루어지는 공식 절차에서 고려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B. 임시 정학, 제한 또는 금지 – 본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공식적인 최종 결정 절차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인 제제 또는 조치가 선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학생 행동 수칙에 따른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캠퍼스 전체 또는 지정 구역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지정된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가 제한되거나, 특정인과의 접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는 학생처 부학장 또는 그 지정자가 해당 학생이 타인의 건강, 안전, 복지, 또는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조치에는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 조치를 부과하는 관계자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조건과 제한이 포함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 정학,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학생은 리더십 직책(예: 학생 자치기구, 기숙사 자문인, 오리엔테이션 리더, 동아리 회장/리더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아리 활동 또는 사교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종단할 의사가 없거나 종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국한되지 않는 캠퍼스 주관 활동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복원은 학생처 부학장 또는 그 지정자의 재량에 따릅니다.

모든 임시 조치는 관련 절차, 항소가 종결될 때까지, 또는 최종 조치를 부과한 담당자가 그 이전에 종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까지 적용되며 효력을 유지합니다.

임시 조치를 받은 학생은 studentlife@risd.edu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언제든지 학생생활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에게 해당 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에는, 최종 조치가 부과되었던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이 재입학을 위한 모든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접수되면 학생처 부처장은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학생 및/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 부처장은 이를 바탕으로 청원을 기각하거나, 특정 조건을 붙여 청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아무런 조건 없이 청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C.

- A. 수업 퇴실(임시 조치) – 학생의 행동, 태도 또는 의사소통이 수업의 학문적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경우, RISD 교원은 재량에 따라 강의실, 스튜디오 또는 기타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업 시간 또는 해당 교육 활동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치일 뿐, 해당 과목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적 또는 수강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B. 수강 철회(영구 조치) – 학생처 부처장 또는 그 지정자는 학생이 수업의 교수 및 학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였고, 경고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할 의사가 없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원 및/또는 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영구적으로 수강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